양구군 공고 제2016 - 606호

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5일

양 구 군 수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
2. 사업(대지위치)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05-9번지
3. 도로위치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05-9번지(1필지)
4. 도로길이 : 20m
5. 도 로 폭 : 0.7m
6. 도로면적 : 14㎡
7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 재 지	지 번	면 적				소 유 자	비 고
		공부면적(㎡)	길이(m)	너비(m)	면적(㎡)		
양구군 양구읍 정림리	205-9	424	20	0.7	14	강현민	도로지정동의
	1필		**20**		**14**		